

개정개요

※ 국세 반영

개정 전		개정 후	
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지방소득세율 및 과표구간	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지방소득세율 상향 조정	
○ (일반법인)		○ (좌 동)	
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0.9%	2억원 이하	1.0%
2억원 ~ 200억원	1.9%	2억원 ~ 200억원	2.0%
200억원 ~ 3,000억원	2.1%	200억원 ~ 3,000억원	2.2%
3,000억원 초과	2.4%	3,000억원 초과	2.5%
○ (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)		○ (좌 동)	
과세표준	세율	과세표준	세율
200억원 이하	1.9%	200억원 이하	2.0%
200억원 ~ 3,000억원	2.1%	200억원 ~ 3,000억원	2.2%
3,000억원 초과	2.4%	3,000억원 초과	2.5%

 개정 내용

-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'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(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%p 상향)함에 따라,
 - 국세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.1%p(국세의 10% 수준) 상향 조정

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제11조)
 - ※ (예시) 회계기간이 '25.4.1.~'26.3.31.인 법인의 '25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종전 규정에 따른 세율(0.9~2.4%) 적용

■ 지방세법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지방세법 부칙 제11조(법인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103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